

의안번호	제 202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육성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데이터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주체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빅데이터 활용 및 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지사가 추진하는 데이터산업 육성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6조의2)
- 수탁자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안 제15조)
- 위원회의 명칭·구성 변경 및 비상설 형태로 전환(안 제8조·제9조)
- 심의 대상 안전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체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데이터산업 육성을”을 “데이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로, “마련·시행”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기본계획 수립)”을“(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육성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데이터산업 육성)”을“(데이터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산업체의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6.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지원

8.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6조의2에 따른 지

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5호) 중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를 “관련하여”로 한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과제 선정·공모·평가에 대한 사항
6. 산업체와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창업·기술·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데이터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계획으로 본다.

제3조(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충청북도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처음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u>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u>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 <u>데이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u> ----- <u>마련하여 적극 추진</u> ---
제4조(<u>기본계획 수립</u>)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u>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u> 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u>기본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4조(<u>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u>) ① ----- ----- <u>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u> ----- -----. ② <u>육성계획</u> ----- -----. 1. ~ 7. (현행과 같음) ③ <u>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6조(<u>데이터산업 육성</u>)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조(<u>데이터산업 육성사업의 추진</u>)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역산업체의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u> 6. <u>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 국내외 산·학·연·관 교류
· 협력사업 지원

8.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
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빅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
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
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
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
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 기업·법인 및 단체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
받거나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
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
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
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탁
자등에게 사업보고서의 작성·
제출 등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
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
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
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데이터산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 과제 선정·공모·평가에 대한 사항

6. 산업체와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창업·기술·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9. -----
----- 관련하여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도의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데이터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④ 위원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除斥)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다.

⑦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 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제13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빅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
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
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제16조(존속기한)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
년간 존속한다.

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통합·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

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데이터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데이터산업 육성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항목 근거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데이터 산업관련 협회·협의회 등 육성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6조의2(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데이터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등 육성 지원

나. 추계 결과

- 데이터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등 육성 지원 : 1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장 변인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데이터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세외수입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